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Utilization Plan of Interpol to Combat Supranational Crimes

Seiyouen Oh^{a,*} Hyejin Song^{b,1}

^a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65, Semyung-ro, Jecheon, Chungbuk 390-711, Republic of Korea

^b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Education center,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using the connections of Interpol to combat supranational crimes, reflecting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and I'll summarize the countermeasures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which shares information and technology between nations, through the network formation of Asianpol. Second, a policy of Interpol which maximizes the foreign agents and resident officers in Korea needs to be established.

Third, governmental policies and legal measures such as criminal extradition must be available to help the criminal investigations of Interpol quickly and positively.

Fourth, there has to be the expansion of budget for securing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supporting Interpol to fight supranational crimes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KEYWORDS

supranational crimes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performance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riminal extradition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국가적 범죄
인터폴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협력체제 구축
범죄인인도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649-1687. Fax. 82-43-649-1739.
Email. s092724@naver.com

1 Tel. 82-10-6264-5288 . Email. knupe21@hanmail.net

ARTICLE HISTORY

Received Nov. 23, 2014
Revised Dec. 02, 2014
Accepted Dec. 26, 2014

1.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낸 반면, 외국인 범죄, 산업정보의 유출, 밀수사범 등 의사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범죄의 물리적·공간적 제약의 붕괴, 범죄수법 공유 등으로 범죄의 탈국경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그 피해규모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세계화 현상은 '범죄의 광역화 현상'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다양한 범죄의 양산 및 불법적 비정부조직에 의한 국제 무질서 현상 등 부정적 현상도 함께 가져왔다. 국내범죄와 초국가적범죄는 상호 융합, 보완, 지원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제 단순한 일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Coninx Michele, 2009: 165).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무기밀매, 마약밀매,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범죄의 모의·실행과 피해발생, 범죄자의 도주, 범죄수익의 은닉 등 현대에 이르러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쉽게 국경을 넘나드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 형사사법기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백기봉, 2013: 73). 이러한 문제에 입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효율적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폴의 국제협력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2. 초국가적 범죄와 인터폴에 관한 논의

2.1 초국가적 범죄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은 이미 1970년대에 등장하여 1990년대 범죄학자 및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2000년 이탈리아 팔레모에서 각국 대표들 간에 합의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3조 2호에서 범죄의 초국가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 범죄행위가 1개국 이상에서 행해지는 경우, b) 한 국가 내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졌지만 그 모의, 준비 및 실행행위 등이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c) 한 국가 내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졌지만 그 범죄행위에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개입된 경우, d) 한 국가 내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했지만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에 파급되는 경우 그 범죄행위는 초국가성을 가진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초국가적 범죄는 범죄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현실 및 가상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초국가적 현상으로 생긴 기회를 범죄목적에 이용하거나 활용하고, 그래서 그 진압과 통제에 어느 한나라 사법기관의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공동협력이 요구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황문규, 2011: 97-100).

또한 UN의 경우 초국가적 범죄를 "범죄의 개시와 예방 그리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2개 국가 이상과 관련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Muller, 2001: 14).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UN은 초국가적 범죄를 18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자금세탁, 테러리스트의 활동, 예술·문화재의 절도, 지적 재산권의 절도, 무기의 불법거래, 해적행위, 납치, 보험사기, 컴퓨터 범죄, 환경범죄, 인신밀매, 사람신체의 일부분을 거래하는 행위, 불법 마약 거래, 금융사기, 합법적 사업에의 침해, 공무원의 부패와 뇌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기타 다른 범죄들이 그것이다(Emmers, 2003: 2; 이만중, 2013, 1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정한 초국가적 범죄의 18개의 범주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 중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인터폴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인터폴의 개념 및 역할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나라의 범죄와 범 죄인들의 대한 수사를 위해 1923년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es Police Commission)를 창설하고, 1956년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 이하 인터폴)로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터폴은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대물범죄, 조직범죄, 테러, 마약 등 주요범죄에의 대응, 범죄로부터 획득한 재산의 확인, 추적 및 압수를 담당하며 UN을 비롯한 다 국제기구와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EUROPOL과의 협력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국제형사경찰기구 회

원국으로 가입하여 1965년 5월 21일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한민국 중앙사무국을 내무부 치안국에 설치한 이래 국제형사경찰기구 사무총국과의 공조, 다른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의 공조, 국내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국제수배서 처리, 국제 경찰협력체제 강화 및 전문요원 양성과 위조지폐 여부 조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박기륜, 2004: 325-375; 박보라, 2013: 109-110).

인터폴의 설립목적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죄와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형사경찰 당국간의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시키고 일반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립·발전시키는데 있다. 모든 법집행기관들은 인터폴 사무총국과 회원국들 간에 협조하고 있는 테러·살인·강도·불법마약거래·실종자 소재확인·사기·절도 등 국제성 범죄 수사에 대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또는 외국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박기륜, 2009: 138).

인터폴은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와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의 활동을 하나 국제법상의 협정이 아니므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다. 자체 수사인력이 없으므로 '엑스400'이라는 통신망을 운영한다.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인터폴 가맹국의 중앙사무국과 연결 돼 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자나 국경을 넘어 도망친 범죄자의 소재 수사, 정보 교환 등이 주된 일로서 정치·군사·종교·인종 문제 등에 관여하는 것은 엄금(헌장 제3조)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주로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 교환, 전과 조회, 사실 확인과 수사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2012년 현재 190개국의 회원국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사무총국 또는 회원국 간의 연락 및 협조 요청에 주요한 창구가 되는 국가 중앙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서울에서 제68차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경찰 해외인력을 '치안담당 영사'라는 이름으로 7개국 13개 지역 해외공관에 직원으로 상주시키고 있다(<http://terms.naver.com>).

3. 초국가적 범죄 발생과 인터폴의 국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3.1 국내 초국가적 범죄 발생현황과 문제점

초국가적인 범죄유형에는 크게 무기밀매, 마약밀매, 자금세탁, 조직범죄, 화폐위조, 테러리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 유형 중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터폴 활동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마약류 범죄발생 현황

Table 1. Domestic arrested current states of drug offender

Type \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Drug offender	5,519	1,396	2,198	1,124	759
psychotropic drug offender	767	7,457	7,965	6,771	7,226
Hemp offender	848	1,045	1,712	1,837	1,189
Total	7,134	9,898	11,875	9,732	9,174

Data Sources: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 white paper, 2007-2011.

<Table 1>은 현재 국내에서 체포된 마약검거 현황으로 2007년도 7,134에 2008년도 9,898 명으로 28.7%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도 전년대비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마약사범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Table 2>의 마약공급사범은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2009년은 전년대비 24.6%, 2011년에도 전년대비 7.6%가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Table 1>과 <Table 2>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마약사범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과 앞으로 국제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 세탁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마약을 위한 돈세탁, 국제마약조직범죄의 증가, 약물중독자의 증가 등 다양한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마약사범에 대응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지속적인 기법의 개발과 함께 국내에서는 검찰,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경찰 기관 등의 마약퇴치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조체제와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

제적으로 최대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트라이앵글 즉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마약생산이 작년 한해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최근 3년간 마약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225건(27.4%), 미국 185건(22.6%), 영국 73건(8.9%) 순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권의 마약생산과 마약반입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풀을 활용한 수사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2. Arrested current states of drug supplier

Type \ Year	2008	2009	2010	2011
Drug offender	10	45	218	37
psychotropic drug offender	1,684	2,035	1,681	2,041
Hemp offender	112	172	125	126
Total	1,806	2,252	2,024	2,177

Data Sources: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 white paper, 2007-2011.

(2)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발생 현황

최근 초국가적인 범죄와 한국내 외국인 조직폭력의 연대가 이루어져 국내 조직범죄가 국제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한국 폭력조직들은 이미 경찰기관의 단속과 관리 대상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인 범죄 집단과 연계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Table 3>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파악하여 집계한 국내 외국인 범죄조직과 형태를 살펴보면 국내 외국인 폭력조직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폭력조직이 많았고,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동남아권 국가의 폭력조직이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신흥조직들이 범죄조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주요공급처가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신흥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범죄가 행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강제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9개국 56명에 달하며, 그 중 이슬람권 국가출신으로 방글라데시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¹⁾,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하여서도 마약과 국내 밀입국,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있어서의 국제조직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각 국가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범죄조직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와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가 필요하지만 법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인터폴체계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able 3. Domestic foreigner organizes violent crime occurrences

Nation	Group of organizations	Number of organizations
China	22	2300
Vietnam	5	800
Philippines	2	300
Thailand	4	100
Bangladesh	4	100
Russia	11	1000

Data Sources: Young-Sub, Han(2010): Reg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in Southeast Asia such as Drug, Organized Crime, Human Trafficking, and Piracy, p74.

(3) 국내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Table 4>에서 보느냐와 같이 2010년 이후로 매년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는 2010년 85%에서 2013년 56.2%로, 사이버테러범죄의 경우에는 2010년 81.3%에서 2013년 43.5%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검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197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1) Dong A .com, "Terrorist group connection foreigner 56people deportation.....", 2014. 08 .21.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정보보안 인력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사이버테러 이외에도 최근 IS테러 단체의 사이버상의 테러선전을 통한 지원인력 모집이나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직접적인 테러는 아니지만 테러단체를 선동 및 연합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초국가적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테러와 범죄들 사이의 동맹과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변 국가들 간의 통합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Table 4. Domestic Cyber crime occurrences

Classification	Total		Cyber terror crime		General cyber crime	
	Occurrence	Arresting (rate)	Occurrence	Arresting (rate)	Occurrence	Arresting (rate)
2010	122,902	103,809(84.4)	18,287	14,874(81.3)	104,615	88,935(85)
2011	116,961	91,496(78.2)	13,396	10,299(76.9)	103,565	81,197(78.4)
2012	108,223	84,932(78.5)	9,607	6,371(66.3)	98,616	78,561(79.7)
2013	155,336	86,102(55.4)	4,532	4,532(43.5)	144,959	81,573(56.2)

Data Sources: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date reconstitution, 2010-2013.

3.2 인터폴의 국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1) 국제형사사법공조 현황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12개국, 아프리카 9개국, 유럽과 중앙아시아 8개국을 포함하여 2013년 29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Table 5>의 연도별 국제형사사법공조 실적을 살펴보면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는 2010년 148건에서 2013년 275건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도 2010년 91건에서 2013년 101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초국가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공조요청이 매우 적은 편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은 다른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은 국가와 비교할 때 그 활용적인 측면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에 대한 공조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able 5.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Performance

Year	Type	Total	Foreign requests for cooperation	Cooperation requests about Foreign
2010		239	148	91
2011		500	388	112
2012		445	384	61
2013		376	275	101

Data Sources: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ion yearbook, 2010-2013.

(2) 범죄인인도 청구 현황

우리나라는 2013년 3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유럽과 중앙아시아 6개국과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조약이발효 중이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현황은 2010년 28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18건, 2013년에는 12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테러,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에 대한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6. Criminal extradition Performance

Year	Type	Cooperation requests about Foreign
2010		28
2011		15
2012		18
2013		12

Data Sources: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ion yearbook, 2010-2013.

4.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 활용의 효율적 대응방안

초국가적인 범죄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전 세계의 문제로 위의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볼 때 이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과 대응적인 측면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국가적인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 활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 초국가적 범죄와 자국 내 인터폴의 협력실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시안 폴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인 범죄에 있어 최근 테러조직이나 국제범죄조직들은 그들 사이에 동맹과 협력체제를 맺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안 폴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한 공조체제의 구축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변국 수사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수사를 위한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성권:2010, 336). 구체적으로 아시안 폴 간의 수사 및 정보교환, 수사협조 및 각국의 기술지원, 수사관의 교환 및 교육 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설치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국가 간의 정보의 공유를 통한 신속한 범죄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공유는 많은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협력체제를 통한 신뢰도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이 파견 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파견국에서 주재국 경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정보를 수집, 국제성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공조수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고 인터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규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선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사법공조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경찰협력으로의 공조수사는 인터폴 회원국 간의 법적구속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며(임중훈, 2014: 133), 직접적인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사절차와 진행에 있어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능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소요시간도 길어 범죄 진압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인터폴 제재에 대한 법적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에 따른 수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4) 국제화, 정보화의 네트워크를 통한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과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아시안 폴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더불어 외국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대 및 편성이 확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터폴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과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아시안 지역의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테러의 위험성 등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범죄조직과도의 연계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터폴을 활용한 국제형사법공조와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인터폴은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과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문헌조사,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초국가적인 범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따른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 등의 교류 및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의 한계가 있어 보다 실증적인 방법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들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K.R, Bark(2009). "A Study on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ce Mutual-Assistan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cused on Ways of Coping with Transnational Crimes-",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11 No.4, pp.132-160.
- S.K, Cho(2012). "Transnational Threats: Nexus between Terrorism, Drug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and New Counter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Vol.28 No.1, pp. 317 - 340.
- Y.B, Han(2010). "Reg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in Southeast Asia such as Drug, Organized Crime, Human Trafficking, and Piracy", National Defense Graduate School, research report.
- M.G, Hwang(2011). "Transnationale Kriminalität und deren Bekämpfung durch koreanische Polizei", Journal of Police Science research, Vol.11 No.4, pp. 95 - 129.
- M.J, Lee(2013). "A Study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ransnational Crim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Vol.6. No.1, pp. 104-121.
- J.H, Lim(2014). "Europol and Northeast Asia", Journal of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Vol.24 No.1, pp. 117 - 142.
- K.B, Paek(2013).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to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0 No.1, pp.71-96.
- B.R, Park(2013). "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on Transnational Crime in North-East Asia ",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8 No21, pp95-119.
- Public Prosecutors' Office(2010-2013). prosecution yearbook.
- Public Prosecutors' Office (2007-2011). Prosecuto white paper.
- Bossard, A. (1990). Transnational Crime and Criminal La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Office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 Muller, Gerhard O. (2001). "Transnational Crime and Concepts" in Williams. P. & Vlassis, D. (Eds.),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 Concepts, Activities and Responses, London: Frank Cass.
- Coninsx, Michele & Jose Luis da Mota. (2009). "The International Role of Eurojust in Fighting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4.

<http://terms.naver.com>